

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2022. 10. .

제안자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설치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(위탁운영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□ 위탁운영 목적

- 레저스포츠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
- 동계올림픽 경기장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지역주민이 운영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시설현황

- 연면적 1,200㎡(239-1번지 600㎡, 240-144번지 600㎡)
- 시설규모: L 18.45m × W 16.79m × H 9.03m, 지상 3층 규모
- 시설구성: 총 14개의 코스로 구성, 체험 소요시간 1시간 정도
- 수용가능 인원: 1일 최대 1,600명 ~ 1,800명
- 부대시설: 사무실(7m×3m), 창고(6m×3m) 컨테이너 각 1동
- 토지사용기간: 토지사용 계약일부터 시설물 존치일까지

□ 위탁계획

- 시설명 :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
- 위치 :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39-1, 240-144번지 일원
(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인근)
- 대상사무 :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
- 위탁기간 : 2023. 03 01. ~ 2024. 02. 29.(1년)
- 위탁단체 : 강원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
- 위탁방법 : 공개 모집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 심사 후 결정
- 위탁금액 : 140,000천원

□ 위탁조건

- 위탁범위 : 체험시설 운영, 위탁시설 장비 등 유지·관리
- 예산지원 : 종사자 인건비, 운영비 등

□ 향후 추진일정
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당초예산 확보 : 2022. 12월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위탁기관 모집공고 : 2022. 12월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2023. 1월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 : 2023. 1월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위·수탁 계약체결 : 2023. 2월

□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레저스포츠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,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,
-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연계하여 운영, 관리를 해 효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, 지역주민이 운영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
□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

< 위치도 >



< 현장사진 >



□ 관련자료

○관련법령 1부. 끝.

소관 관·과·소		올림픽체육과
입 안 자	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올림픽체육과장 박 용 호
	담 당 직위·성명 (전 화)	국제행사팀장 이 희 영 (330-2836)

관계법령 발취

□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0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법인·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해당 위탁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스포츠·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이용료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스포츠·관광자원 등의 보존·관리 및 개발·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